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2008회계년도 제4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10. 21(화) 11:30 제4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협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제4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개최등을 의결하였다.



【제4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계획】

■ 행사취지

- 회원사대표, 건설관련공무원 및 유관단체장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

■ 행사개요

- 일시 : 2008. 11. 13(목) 16:00
- 장소 :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참석대상 : 300명 정도
 - 대구시 김범일시장 및 건설관련 공무원 : 200명
 -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장 : 100명
- 후원 : 대구광역시

■ 주제발표 (3명)

-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방향 : 건국대 토목공학과 신중호 교수
- DGFEZ(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현황과 발전 방향 : 신경섭 본부장
- 광역연계교통망 구축 및 기대효과 :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

■ 진행순서

- 참가자 등록 : 16:00~16:30
- 내빈 소개 : 16:30~16:35
- 개회사(건설협회 대구시회장) : 16:35~16:40
- 격려사(대구광역시장) : 16:40~16:45
- 축 사(이해봉 국회의원) : 16:45~16:50
- 주제발표(3명, 20분씩) : 16:50~17:50
- 질의응답 : 17:50~18:10
- 만찬 및 공연 : 18:10

회원사 대표이사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역건설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대책 건의

우리시회 이홍중 회장은 지난 10. 17(금) 12:00 대구상의 10층 대 회실에서 개최된 『2008년 하반기 대구지역 경제동향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현재 지역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구시등 관계기관의 지원대책을 건의하였다.

■ 지역건설업계 현황

- 지역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9% 정도(관련산업 포함시 1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택부동산등 민간부분의 건설투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 또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정도를 보면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은 분할발주 등의 지역업체 지원제도 적극 적용으로 지역업체가 대부분 전담수주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함
 - ※ 70억미만 지역제한, 70~222억원 지역의무공동도급
 - 반면 토공, 주공 등 국가 공기업은 분할발주가 거의 없고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기관으로 22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없어 지역업체 입찰참여 거의 불가능
- 건설경기 침체로 힘든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경색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대책건의

- 대형프로젝트 발굴 및 건설투자 확대
 - 투자효과가 매우 큰 건설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전체 활성화 도모
 - ※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17.9명/10억원당 및 타산업 생산유발계수 1.99
- 국가 공공기관 시행사업에 대구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대
 -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등에 대구도시공사 시행 비중 확대
 - ※ 대구도시공사는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공사금액에 제한 없이 지역업체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
-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의 본격 발주로 지역업체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금융경색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해소와 운전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 활성화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2008년 제주 연찬회 개최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2박3일간 본회 주최로 『2008 제주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연찬회에는 전국의 시도회장, 대의원, 본회 각종 위원회위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회에서도 이홍중 회장, 도재덕 대의원, 조종수 윤리위원, 최호중 기획위원, 김일상 중소위원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그리고 장수만 조달청장등을 초청하여 당면한 건설업계 위기극복 방안, 건설경기 부양대책, 건설규제완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등 건설업계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건설업등록등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시행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처리기준을 새로이 시달하여 11. 6이후 접수된 신고서류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심사관련

- 자산범위에 아래사항 포함시 부실우려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명자료 제출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기타의 자산 중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예, 입차보증금, 회원권, 상호주식, 장기투자증권) 등을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질자본금 확인 절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아래의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진단내역 증빙자료 징구
 - i) 제예금의 30일평잔, ii) 자산의 과대평가분(예, 재고자산·매출채권·입차보증금 등), iii) 자산총계의 2/100초과 현금, iv) 주요 유형자산(그 소유관계), 또는 v) 대손 처리할 자산

③ 양도성 예금(CD) 자산에 대한 확인 방법

- 금융기관에 등록된 CD로서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와 CD 취득자금의 원천을 관련장부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 판단하되,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

④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 보유시 기술능력

- 토목분야 6인 + 건축분야 5인을 각각 보유하여야 함

⑤ '감사'에 대하여도 신원조회 실시

- 법인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가 포함됨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조달청발주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07.12.27)에 따라 행안부와 협의 거쳐 지방계약법 적용 관련 전자입찰 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 우선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부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키로 하였다.

이로써 지자체의 의뢰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지방계약법령 적용으로 등급별 발주를 하지 않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신용등급이외에 재무비율로도 경영상태평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
- 지방계약법 적용시기
 - 적격심사, 수의계약 대상공사 : 08.11.6(목) 요청분부터
 - PQ 심사기준, 최저가 대상공사, 일괄/대안공사 : 09. 1 이후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개최

우리사회는 경북도회와 공동으로 지난 10. 28(화) 14:0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대구경북 회원사 업무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평가기관 관계자와 공인회계사를 초청하여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신용평가기관 관계자가 공공공사 입찰은 물론 금융권 대출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등에 있어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신용평가제도와 평가방법 실무 및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용평가에 대한 회원사의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신용평가등급 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 좋은 신용평가등급은 단순히 양호한 서류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펀드멘틀에 대한 꾸준한 관리에 좌우됨을 설명
- 재무적 요소인 회계자료의 투명성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재무비율 맹신은 금물
- 비재무적 요소인 경영진의 경영능력, 자금조달능력(재산), 경영전략등이 다른 회사와 차별성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임에 유의
- 각종 금융 거래에 대한 사소한 연체(통신료, 공과금등)도 특히 주의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11. 1시행)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명문화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하도록 함
- 기업신용평가가 입찰관련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 발주기관에 제출한 유효기간내 기업신용평가서는 연 1회 제출에 한함
 - ※ 기대 효과 : **신평소평방지, 입찰비용 절감, 자료제출의 신중, 신평을 질박기 위해 발생하는 부조리 방지**
 -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선금의 추가지급을 의무화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의 적용요건을 구체화
 - 당연 급등요건 : 조정율이 5% 이상 상승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간주
 - 판단 급등요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율(3%)이 충족한 상태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5인 ⇒ 10인이내)하여 지역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제고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신설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해야 -

10.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사용할 때에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2-3106



공사근로자 노임채권의 압류금지

1. 사례

건설업체 甲은 총공사대금 10억원의 상가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정을 90% 상태에서 그만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건설업체 甲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억원 정도 남아 있었고, 건설업체 甲이 건축주 乙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5억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甲의 채권자 丙이 위 남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건축주 乙에게 5억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채권자 丙은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관계 법령 및 입법취지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4조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중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공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 제도가 채무자인 공사업체나 제3채무자인 건축주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실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사례의 경우

공사대금채권 중 공사 근로자의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丙이 한 공사대금 5억원에 대한 압류는 미지급된 공사 근로자의 노임 2억원의 범위에서는 무효가 되므로,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건축주 乙은 압류된 5억원 중 2억원은 공사 근로자의 노임채권이라는 것을 항변하여 압류채권자 丙에게 남은 공사대금 5억원 중 3억원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8.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1,046,000	1,046,000	국제철스텝강가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재고량 증가되어 다음달에는 철근가격 인하소지 짝으며 수급상황 원활함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D13mm	1,036,000	1,036,000		
		D16mm	1,031,000	1,031,000		
	고장력 철근	D10mm	1,041,000	1,041,000		
		D13mm	1,031,000	1,031,000		
		D16mm	1,026,000	1,026,000		
후판	SM490B	1,265,000	1,265,000	원자재인 철광석과 유연탄 인상으로 2009년까지는 가격상세 예상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1,210,000	1,210,000	가격동향은 철근과 유사하며 수급사정도 양호해짐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1,210,000	1,210,000			
	400X400X13X21mm	1,280,000	1,28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300	원가상승으로 가격인상요인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급 원활함	0 단위:포 0 대리점-수 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9,700	49,700		0 단위:m 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시멘트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수급사정 원활함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공급은 감소되었으나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0 단위:m 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9~12X4.5	900	900	환율 상승으로 가격인상요인 있음	0 단위: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58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5	60	10	3	158	-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세왕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범어동 246-10	경북 청도군 청도읍 교수리 151-18	(054) 371-3235
"	(주)안신건설	대구 달서구 상인동 257-12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477	(054) 971-4057
대표자	유진종합건설(주)	도재덕	도재덕, 도형운	(053) 764-0513
"	삼백종합건설(주)	서만섭	신석호	(053) 382-0301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8.10.01~10.31)	1	1	8	-	10
누계 (2008.01.01~10.31)	31	48	83	2	164



❖ 제9회 교육과정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개설 안내

- 교육목적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에 적용하는 실무처리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함
- 교육일시 : 2008. 11. 18(화) ~ 11. 21(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0만원정도 환급지원)
- 문 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교육담당 직통 (02)3485-8252

회 원 동 정

◆ 업무부 직원 모임 "건설C" 체육대회



회원사 업무부 직원간 체력단련과 상호 친목도모를 위하여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C"에서 지난 10. 25(토) 우리사회와 경북도회, 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을 초청하여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회 장 동 정



❖ 대구상의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8. 10. 17(금) 12:0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애로사항 설명 및 지원 대책 건의

❖ 제4차 간사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8. 10. 21(화) 11:30 사랑채 식당
-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 및 부의사항 처리

❖ 이해봉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 면담 건의

- 일시 및 장소 : 2008. 10. 23(목) 17:00 국회의원회관
- 하 신 일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건의 및 심포지엄 참석요청

❖ 2008년 제주 연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8. 10. 30(목) ~ 11. 1(토) 제주도
- 하 신 일 : 건설산업의 활력방안 및 미래경쟁력 배양 방안 모색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